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(채현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2.

발 의 자 : 채현일 · 이해식 · 이재강
김병주 · 박지원 · 이개호
양부남 · 김현정 · 정진욱
한민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.

그러나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대상자 중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각각 법무법인등, 회계법인,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최근, 퇴직 전 수사 및 심리·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수사 및 심리·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

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7항).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무법인등 또는 합작법인에 취업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변호사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변호사부터 적용한다.

⑧ · ⑨ (생략)

⑧ · ⑨ (현행과 같음)